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수입식품등의 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수입식품등

2.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3.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 수리 시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한 검사를”를 “대한 검사(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검사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30조제1항”을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 중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를 “있으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작업장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업장 현황 Status of Establishment	위생책임자 Person in charge of sanitation	이름 Name
		연락처 Phone Number including area code
		전자우편 E-mail
	업종 Type of business	☐ 도축장 Slaughterhouse ☐ 식육포장처리장 Meat cutting and packaging plant ☐ 식육란포장처리장 Shell egg packaging plant ☐ 식육가공장 Meat processing plant ☐ 유가공장 Milk processing plant ☐ 알가공장 Egg processing plant ☐ 식육보관장 Meat storage house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Whether a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pplies to the item information below, <i>if applicable</i>	☐ 적용 안함 No ☐ 적용 Yes ※ 적용하면 그 시스템을 선택 If “Yes”, check as applicable or specify the system ☐ HACCP ☐ ISO 22000 ☐ GMP ☐ GFSI ☐ 기타 Other () ※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Whether to be certified by a certification body ☐ 없음 No ☐ 있음 Yes ※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정보를 제공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인증명 Title of certification () ■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 인증일 Certification date () ■ 만료일 Expiration date ()
	축종 또는 주원료 Species of livestock or main ingredients	

별지 제28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 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적용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1. 식품첨가물 : 공포한 날
2.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2023년 12월 1일
3.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등 : 2024년 6월 1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9조의2(수입식품등의 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말한다.</u> <u>1.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수입식품등</u> <u>2.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u> <u>3.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u> <u>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u>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 수리 시 정기적으로 검증</u>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하여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

----- 대한 검사(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검사는 제외한다)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